

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11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**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**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에 따라 서울시민의 **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사업**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'**05년 4월에 설치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**로,
- 나. 광역단위 사업기획 및 운영업무, 25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센터 지원,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,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,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
- 다. 정신관련 분야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**민간위탁 기간이 '24.12.31.자로 만료됨**에 따라 **재위탁 추진**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)에 의거 **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**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
- 나. 추진근거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-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①항 3호

다. 민간위탁 필요성

-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변화로 경증 정신건강문제와 함께 중증정신질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서울시민의 마음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함.
- 정신건강증진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로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·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.

라. 주요 위탁사무

-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
 - 25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센터 지원, 종사자 역량강화
 -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
 - 찾아가는 심리지원사업, 청(소)년 정신건강사업, 중독관리사업 등
 - 정신건강증진시설 지원 및 당사자·가족 지원사업 등
-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(업무개발 및 기술지원, 평가 등)
- 그 밖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“시”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마. 위탁유형 : 시설위탁

- 시설명 :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
- 소재지, 시설규모
 - (본관)서울중로구 동송 3길 40(일석기념관), 695.84㎡(211평)
 - (별관, 청년마음건강센터)서울 중로구 대학로 12길, 238.64㎡(72.1평)
 - (별관,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)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55, 299.09㎡(90.4평)

바. 위탁기간 : 3년('25. 1. 1.~'27.12.31.)

사. 그간 위탁내용

선정방법	위탁기간	수탁기관
- 신규위탁 등	‘05. 1.20.~‘16. 3. 5.	용인병원유지재단
- 재위탁(공모)	‘16. 3. 6.~‘19. 5.29.	서울대학교병원 ※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분리(‘16년)
- 재위탁(공모)	‘19. 5.30.~‘21.12.21.	서울의료원
- 재계약	‘22. 1. 1.~‘24.12.31.	서울의료원

아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-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

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② 시·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

제9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 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

- 2024. 5. 16. : 민간위탁추진 계획 수립
- 2024. 5. 29. :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(적정, 2024년 제4차)

※ 작성자 :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향숙 (☎ 2133-7546)